검 토 보 고

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○동 조례안은 1998년 5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○현행 조례에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의 서기는 위원장이 문화계장을 임명토록 되어있으나(임명직) 현실적으로 문화계장외에는 대안이 없으므로 당연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의 서기를 문화계장으로 임명하던 것을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변경함.(안제6조제2항)

□ 검토의견

○동 조례안은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의 서기는 위원장이 문화계장으로 임명토록 되어 있던 것을 문화계장이 당연직으로 서기가 되도록 변경하는 단순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□ 검토의견

○동 동의안은 열악한 민방위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생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파주읍 연풍리 소재 시유지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400평 규모로 지하1층, 지상2층의 민방위전용 교육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전용교육장 건립에 따라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시민안보의식의 제고,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한 교육생 불편해소, 적정한 교육인원 배분으로 인한 효율성제고, 비수기시 주민 다목적 시설 활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.

○소요 사업비가 13억원으로 최근의 경제실정에 비추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으나 사업비중 50%인 6억5천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되고 접적지역인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, 균형적인 지역개발, 시유지의 효율적 활용, 긍정적인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판단됨.

○비수기시 교육장을 예식장, 연회장, 주민회의장 등의 주민복지를 위한 다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여지나 이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